

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자료

[21.09.08 한국노인복지중앙회]

1 | 지원분야 및 대상시설

사업종류 시설유형	치매시설 증개축·개보수*	증원을 위한 증개축	안전을 위한 개보수	장비보강	화재안전 창문설치
양로시설	X	X	O	X	O
노인요양시설	O	O	O	O	O
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	O	O	O	O	O
주야간보호	O	O	O	O	O
단기보호	X	O	O	O	O
종합재가시설**	X	X	X	O	X

* 치매전담실 설치 등 치매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증개축·개보수 지원

** 종합재가시설 :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시설(서비스) 설치·운영(필수)하고 여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실시시설

2 | 지원조건
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지방비 50%(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)
 - ※ 공립(치매전담형) 종합요양시설 신축 : 국비80%, 지방비20%
 - ※ 사유없이 기능보강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에서 제외

3 | 자부담비율 의무화

- 자부담비율 의무화 : 증개축, 개보수, 장비보강 사업은 지원 횟수 등에 따라 비율변동

지원받은 기간	지원횟수	자부담 비율
최근 5년 내	0회	없음
	1회	총 사업비의 5% 이상
	2회	총 사업비의 7% 이상
	3회 이상	총 사업비의 10% 이상

※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(증개축·개보수)의 경우 자부담 의무비율 폐지

4 | 국비 지원단가('21년 기준)

○ 일반형 시설(치매시설 전환 포함) 기능보강

[유형별 지원단가]					
종류 \ 유형	양로시설	노인요양시설 (노인요양공생포함)	주야간 보호시설	단기보호시설	종합재가시설
치매시설 전환 증개축· 개보수	-	(증개축) 지원단가(1,800천원/m ²)x지원면적 (최대360m ²)x구고보조율(80%) *필요시 실제건축면적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('21년 기준) (개보수) 지원단가(750천원/m ²)x지원면적 (최대180m ²)x국고보조율(80%) *필요시 실제 건축면적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('21년 기준)			
증원을 위한 증개축	-	지원단가(1,364천원/m ²) x지원면적(최대708m ²) x국고보조율(50%) * 필요시 실제건축면적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('21년기준)	지원단가(1,364천원/m ²)x지원면적 (최대255m ²)x국고보조율(50%) * 필요시 실제건축면적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('21년기준)		
종류 \ 유형	양로시설	노인요양시설 (노인요양공생포함)	주야간 보호시설	단기보호시설	
안전을 위한 개보수	지원단가 (682천원/m ²) x최대지원 면적(330m ²) x국고보조율 (50%)	지원단가(682천원/m ²) x지원면적(최대500m ²) x국고보조율(50%) * 필요시 실제건축면적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('21년기준)	지원단가(682천원/m ²)x 지원면적 (최대255m ²)x국고보조율(50%) * 필요시 실제건축면적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('21년기준)		
증원에 따른 장비보강		(30인 이상) 100백만원x50% (30인 미만) 60백만원x50%	(장비지원)30백만원x50% (송영차량)30백만원x50%	(장비지원) 50백만원x50% (송영차량) 30백만원x50%	
안전을 위한 장비보강		10백만원x50%	10백만원x50%	10백만원x50%	
화재안전 창문설치	(현원50인 미만)15백만원x50% (현원50인 이상~100인 미만) 20백만원x50% (현원100인 이상)25백만원x50%				